

현장실습기관 의무사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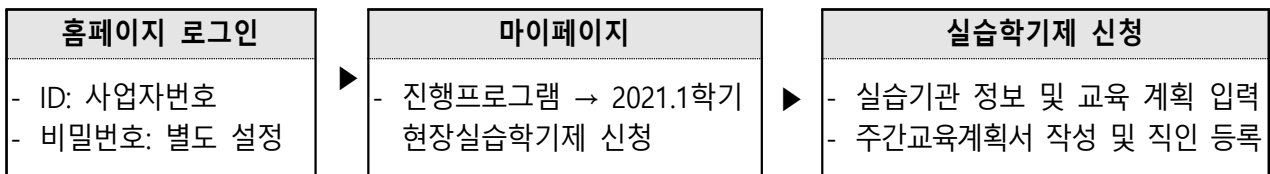
1. **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 증명서 제출**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)
 - 기간: 실습 시작일 이후 14일 이내 / 제출처: E-mail 제출(roddl526@naver.com)
2. **참여학생에게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**
3. **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**

1. 개요

- 가. 사업명: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
 나. 실습기간: 2021. 3. 2.(화) ~ 6. 21.(월) / 기간 내 4주, 8주, 12주 이상 중 선택 운영
 다. 기업 신청기간: 2021. 1. 19.(화) ~ 2. 24.(수)
 라. 참여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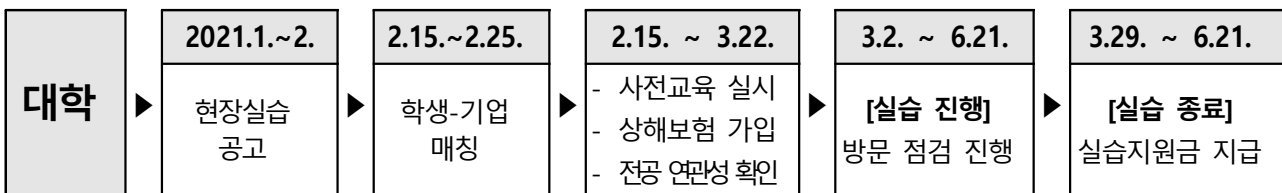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	비고
학생	제주대학교 재학생	
실습기관	제주대학교 가족회사, 도내·외 기업체, 연구소, 기관 등	
※ 실습 운영 및 실습지원금 지급 관리 - LINC+사업단: LINC+사업 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- (본부)현장실습지원센터: 제주대학교 1~2학년 재학생, LINC+사업 비참여학과 재학생		

마. 참여방법: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://intern.jejunu.ac.kr>) 온라인 신청



2. 2021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내용

가. 운영절차



실습 기관	1.19.~2.25.	2.15.~2.25.	3.2. ~ 6.21.	3.2. ~ 실습 시작 후 14일 이내	3.29. ~ 6.21.
	▶ 참여 신청 (기업지원금 지급 필수)	▶ 학생 선발	▶ [실습 진행] 출석부 작성	▶ 산재보험 가입 (가입서류 필수 제출)	▶ [실습 종료] - 기업지원금 지급 - 만족도조사 참여
학생	2.8. ~ 2.24.	2.15.~2.25.	2.15. ~ 2.26.	3.2. ~ 6.21.	3.29. ~ 6.21.
	▶ - 참여 신청 - 수강 신청	▶ 선발여부 확인	▶ - 사전교육 참여 - 학과 서류 제출 (현장실습신청서)	▶ [실습 진행] 업무일지 작성	▶ [실습 종료] - 결과보고서 제출 - 만족도조사 참여 - 학점 취득

나. 운영 일정

구 분	추진기간	주요내용
<실습기관>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	2021. 1. 19.(화) ~ 2. 7.(월)	< 1차 신청 기간 > -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: 실습 운영 내용 입력 ※ 학생 실습 신청이 2. 8.(월)부터 시작됩니다.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바랍니다.
	2021. 2. 8.(화) ~ 2. 24.(수)	< 2차 신청 기간 > - 제주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: 실습 운영 내용 입력 - 학과추천 실습 수요조사 등록
<참여학생>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실습신청	2021. 2. 8.(월) ~ 2. 24(수)	<1차 신청 기간> 1. 수강신청: 하영드리미 /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. 실습기관 선택: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)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2) 실습기간 확인, 실습기관 선택
	2021. 3. 2.(화) ~ 3. 22.(월) *복학 신청 및 허가기간	<2차 신청 기간> * 복학 신청자 대상 추가 기간 운영 1. 수강신청: 하영드리미 /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2. 실습기관 선택: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1) 이력서, 자기소개서 작성 2) 실습기간 확인, 실습기관 선택
실습기관-참여학생 매칭	2021 2. 15.(월) ~ 2. 25.(목)	- 실습생 선발 및 실습기관 확정 ※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
참여학생 명단 (매칭명단) 안내	2021. 2. 25.(목) ~ 2. 26.(금)	- 참여학생 소속 학과에 안내 · 전공 일치 여부 확인
오리엔테이션	2021. 2. 15.(월) ~ 3. 22.(월)	- 참여 학생 기본소양 교육 및 행정사항 안내 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- 안전교육 및 학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- 온라인 또는 개별 사전 교육 실시
현장실습학기제 진행	2021. 3. 2.(화) ~ 6. 21.(월)	- 최종 협의 된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 진행 - 4주, 8주, 12주 이상 실습 진행 ※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및 가입서 증명서 제출 (제출처: roddl526@naver.com)

구 분	추진기간	주요내용
현장 방문지도	2021. 3. 2.(화) ~ 6. 21.(월)	- 현장실습생 현장지도 및 원격 점검 - 현장실습기관 애로사항 확인 - 취업 연계
만족도 조사	2021. 3. 29.(월) ~ 6. 27.(일)	-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 실습 만족도조사 실시
실습종료	2021. 3. 29.(월) ~ 6. 21.(월)	- 실습생 학점 취득 - 실습지원금 지원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

3. 현장실습 실습지원금 지원

가. 실습지원비 지급 내용

지급기관	지급 금액	내 용
LINC+	800,000원 / 4주	- 4주(20일) 단위로 지급하며, 취업 또는 상해 등으로 조기 종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- 12주 이상 참여학생의 경우, 일할(40,000원/일) 지급
실습기관	실습기관 별도 기준	- 참여학생에 대해 실습기관이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- 지급방법(실습기관 선택):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출연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

※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을 중단/취소하거나 기타 재난 상황,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습 일정 변경으로 실습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실습지원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

나. LINC+사업단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내용

구 분		지원내용	비 고
참여 학생	도 내	실습비 - 실습일수 × 40,000원	
	도 외	실습비 - 실습일수 × 40,000원	
		숙박비 - 10,000원/1일 × 실습일수 - 당일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지원	
		교통비 - 실습 참여학생 왕복 항공료 외 교통비 실비 지원	150,000원 이내 지원
	상해보험가입	- 실습기간 동안 상해보험 가입	

다. 기타 사항

- 1)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,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며 실습지원금을 지급함
 -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6조 2항
 - 제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

4. 현장실습학기제 유의사항

가. 참여대상별 의무사항

구분	의무사항
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습기업(관)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 - 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(관)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-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한다. - 현장실습이 완료되었을 때 실습 최종보고서와 주간보고서,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실습 종료 7일 이내에 소속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실습기관	<p>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가입 증명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용노동부고시 개정: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(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) · 시행일(2018. 9. 11.) 이후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적용범위 대학생까지 확대 · 가입방법: 근로기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'근로자 고용신고서' 제출 · 미가입 시 과태료 등 불이익 있음
	<p>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사항 안내 및 안전 교육, 인권 보호 - 현장실습 참여 학생 관리 및 학생 출석부 등록, 학생평가서 작성 - 실습생의 적합한 부서 배치 및 실무 교육

나. 현장실습 운영 원칙

구분	내 용
실습기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생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. - 학생의 보건·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. - 실습기관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·기술·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실습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
현장실습 운영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~8시간, 연속 4주 이상 운영하며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-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. -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실습기관에서 결정한다.

5. 코로나19에 따른 현장실습 업무 조치

가. 재택현장실습 진행

- 1) 재택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, 일정한 요건* 하에서 재택현장실습 허용
- 2) 해당학기 현장실습 기간의 1/4기간 동안은 재택현장실습 운영 가능

* (재택현장실습 인정요건)

- ① 국가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대응기준이 필요할 때
- ② 실습기관이 재택현장실습을 학교에 요청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학생 관리방법

(재택현장실습 신청서)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, 학생들은 재택실습에 따른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나. 비대면 방문점검 가능

- 1) 대학(교원, 현장실습지원센터, 전담부서 등)에서는 전염병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지도/점검을 원격으로 실시 가능함

6. 문의

- 제주대학교 LINC+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64-754-3125, 4416
- 강경아(hyunslee@jejunu.ac.kr) / 김미경(roddl526@naver.com)